

저공해 미조치 노후경유차 수도권진입 금지

'10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량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출고 7년 이상 된 2.5톤 이상의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이 금지된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경기도는 환경부, 서울·인천시 공동으로 협의를 통해 표준조례안을 마련, 도의회 심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 ('09.12.31)하고 올 4.1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그간의 추진경위

- '09.9.10 운행제한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시행시기 등은 시·도 조례 위임
- '09.8~9 환경부, 경기·서울·인천 공동 공청회개최, 표준조례안 마련
- '09.12.21 제245회 도의회 본회의 조례안 심의, 12.31 경기도 조례 공포

□ 운행제한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2조) 운행제한 지역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경기 : 24개시, 서울·인천 : 전지역)
- (안 제3조) 대상자동차 :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등 저공해 미 조치 특정 경유차로서
 - 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
 - ② 출고 7년 이상된 2.5톤 이상 경유차
 - * 대기관리권역 外 → 內로 通行하는 경유차의 경우 저공해조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 지원으로 시행 유보('11년 국비지원 후 시행 예정)
- (안 제5조) 위반차량 조치 : 1차 적발 시 행정지도,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20만원) 부과
- (부칙) 시행시기 : 조례 공포 후 3개월 경과(서울 4월, 인천 7월 시행 예정)

□ 기대효과

- 운행제한 시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化 촉진
- 연간 3,663톤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통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 이산화탄소(CO₂) 3,199톤/년, 질소산화물(NO_x) 124톤/년, 미세먼지(PM₁₀) 340톤/년 감축

□ 향후 추진일정

- '10. 1월 : 운행제한 시행 세부지침 마련, 시·군 사업설명회 개최
- '10. 2~3월 : 대상차량 소유자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의 홍보 실시
- '10. 4. 1 :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 운행제한 시행

서울시와 인천시도 조만간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4.1, 인천시 7.1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상차량은 경기도 24개시, 서울시, 인천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출고 7년 이상 된 2.5톤 이상의 경유차가 대상이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 대수는 수도권 약 5만9,000대(서울 2만1,601대, 경기 2만7,306대, 인천 1만526대)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소유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인식을 전환하고, “저공해화 촉진유도”를 통해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04년부터 '09년까지 노후경유차 256천대에 7,309억원을 지원(매연저감장치부착 및 개조비용 90~95%지원, 조기폐차보조금은 차량감정가의 80~90%)해왔으며, 지원금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25%로 분담하고 있다. 향후 '14년까지 296천대에 9,8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운행제한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공해차량제한지역(LEZ)으로 지정”된 전지역
- 제외지역
 - 경기 :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군(7개시군)
 - 인천 : 용진군(영흥면은 제외)

주석)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구역

◆국의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현황

구분	동경(APCA) (Air Pollution Control area)	스톡홀름(EZ) (Environmental Zone)	런던(LEZ) (Low Emission Zone)
규제물질	•미세먼지(PM ₁₀)	•미세먼지(PM ₁₀) •NOx(2002년 추가)	•미세먼지(PM ₁₀) (NOx포함 검토 중)
법적체계	•법률위임 없이 동경도 조례에 근거	•도로교통법령의 위임에 의한 시 교통관련 조례	•런던 자체조례 제정 (2007)
규제내용	•배출기준 미충족 경유차 도내운행 금지	•특정경유자동차의 환경지역내 진입금지	•특정경유자동차의 LEZ진입시 이용료납부
대상지역	•동경도 전역 및 3개현 (섬 지역 제외)	•도심부 “환경지역”	•런던시 전역
적용대상	•동경도내를 운행하는 경유차(경유승용차 제외)	•환경지역을 진입하는 경유차(경유승용차 제외)	•런던으로 진입하는 경유차 (경유승용차 제외)
대상차종	•2.5톤 이상 디젤 화물, 버스, 특수자동차	•3.5톤 이상 대형 경유차 (화물, 버스)	•3.5톤 이상 대형화물차, 관광시외버스) ※ 중소형화물, 미니버스 : 2010년부터 시행예정
유예기간 (차령기준)	7년 (최초등록일 기준)	8년 (저감장치 부착시 4년 유예)	7년 이상
배출기준	•PM ₁₀ - 0.18g/kwh(2003년부터) - 0.027g/kwh(2005년부터)	•Euro IV 이상 - PM10 0.02g/kwh - NOx 3.5g/kwh	•PM ₁₀ - Euro III : 0.10g/kwh(2008) - Euro IV : 0.02g/kwh(2012)
규제적합 조치방법	•PM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차량교체 등	•오염저배출차량(Euro IV 이상) •PM 저감장치 부착 차량 •엔진교체 등	•저공해 차량 교체 •저감장치 부착 •Euro기준 충족차량
단속방법	•방문검사와 노상검사 •비디오카메라 단속	•스티커 발부부착 •비디오 장비 사용 노상단속 (경찰, 시공무원) •년 2~4회 정기적	•시스템 및 인력단속 병행 •DB구축, 번호인식 비디오 카메라 활용
위반시 벌칙	•운행금지 명령 •성명 공표 •50만엔 이하 벌금	•벌금 부과 (600 SEK, 약 7만원)	•일일이용료 징수 ※ 혼잡통행료(8GBP, 약14천원)수준 이상
시행시기	2003. 10월	1996년	2008년 2월
주요특징	•도내 전역 대상 •외지 차량도 적용 •수도권 공동시행 •저공해화 우선 추진	•도심부에 “환경지역” 설정 •외국차량에도 적용 •스티커 부착 제도 •인력단속	•런던시 전역 대상 •외지차량도 적용 •오염유발자부담원칙에 의한 1일단위 이용료부과징수 •시스템에 의한 단속

◆2010년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현황

○ 2009. 9. 30 현재

(단위 : 대)

구 분	계	저공해 미조치 특정경유차	저공해 의무조치 미이행 차량			비고
			소계	2008년	2009년	
계	27,306	21,945	5,361	1,988	3,373	
수원시	2,570	2,270	300	129	171	
성남시	1,088	858	230	5	225	
부천시	1,935	1,728	207	126	81	
용인시	2,439	1,760	679	247	432	
안산시	2,440	1,870	570	239	331	
안양시	1,797	1,722	75	44	31	
평택시	1,085	835	250	60	190	
시흥시	1,291	1,024	267	175	92	
화성시	1,360	1,100	260	10	250	
광명시	582	429	153	27	126	
군포시	492	415	77	7	70	
김포시	1,126	808	318	92	226	
이천시	695	556	139	92	47	
오산시	450	277	173	57	116	
하남시	357	305	52	17	35	
의왕시	303	238	65	8	57	
과천시	80	62	18	0	18	
고양시	1,693	1,298	395	228	167	
남양주시	1,621	1,413	208	146	62	
의정부시	1,066	981	85	41	44	
파주시	1,136	703	433	12	421	
구리시	466	411	55	41	14	
양주시	924	635	289	160	129	
동두천시	310	247	63	25	38	

※ 운행제한 대상 차량 : 서울시 21,601대, 인천시 10,526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현황

□ 매연여과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 : DPF)

- 입자상 배출 물질(PM)을 필터에 포집, 연소로 미세먼지 80%이상(인증기준) 저감
- 대상차량 : 대형경유차 ※ 장치가액의 90~95% 지원
- 지원금액 : 321~745만원/대(생계형 차량 339~784만원)

□ 디젤산화촉매장치(Diesel Oxidation Catalyst : DOC)

- 가스상 배출 물질을 촉매(Pt 등)를 이용 산화 처리로 미세먼지 25%이상(인증기준) 저감
- 대상차량 : 소형경유차 ※ 장치가액의 90~95% 지원
- 지원금액 : 76~98만원/대(생계형 차량 93~104만원)

□ 저공해 엔진(LPG) 개조

- 노후된 경유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 오염물질을 60% 저감(미세먼지는 100%)
- 대상차량 : 중·소형차 ※ 장치가액의 90~95% 지원
- 지원금액 : 370~390만원/대(생계형 차량 397~412만원)

□ 노후차량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

- 대상차량 : 대기관리권역내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로, 환경검사기준을 충족하고 차량 7년 이상이 경과된,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생계형 차량 90%) 보조(100~600만원/대)

